

의안번호	제 549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1월 일 (제353회)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1월 6일

#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연철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9
----------	-----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6일

발 의 자 : 연철흙, 김학철, 박봉순,  
박한범, 이언구, 최병윤,  
김영주

## 1. 제정이유

-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 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체육진흥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체육진흥 지원 정의(안 제3조~제6조)
-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정의(안 제7조~제16조)
- 체육단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 마련(안 제17조)
-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안 제1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관계없음

#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7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체육진흥 지원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제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연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 체육업무담당국장,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 충청북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라 한다) 사무처장,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이하 “도장애인체육회” 라 한다) 사무처장
2. 위촉직 : 도 단위 기관·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도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간사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1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경비지원을 받은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충청북도 생활체육 진흥조례
2.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3.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관련법령 발췌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4조(보고·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고 찬 식